현안과제연구

Issue Report

2019. 12. 30.

(가칭)외국인농업기술훈련원 설립 추진 구상 방안

김 기 홍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책임연구원, kimkh@cni.re.kr)

이 도 경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원, lg6678@cni.re.kr)

이 연구는 부여군과 우즈베키스탄 리쉬탄 시의 농업 관련 교류 협력을 위한 (가칭)외국인농업기술훈련원 설립과 관련하여 추진 구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CONTENTS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제도 검토
3. 외국인 근로자 관련 현황
4. 사례 검토
5. (가칭)외국인농업기술훈련원 설립 추진 구상 방안

요 약

○ 현재 부여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노동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개발도상국 도시와의 우호협력 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를 증진하고 농업체험형 해외관광객 유치 및 역사적인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기술훈련원 설립에 대한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리쉬탄 시와의 농업기술 교류 방안을 찾고 협력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칭)외국인농업기술 훈련원 설립과 관련하여 추진 구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농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가 있으며 각각 4년 10개월 체류와 3~5개월 체류를 기본으로 하며 상시근로와 계절적 근로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음

○ 국내 사례로는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2016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시행하여 불법 근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영양군 자체 사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지역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음

○ (가칭)외국인농업기술훈련원의 설립을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사전 검토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상시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 제도 아래에서는 근로 조건을 제외한 순수 교육 기능 기관으로서 설립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0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현재 부여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노동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경제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가 도시와의 우호협력 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를 증진하고 농업체험형 해외관광객 유치 및 역사적인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칭)외국인농업기술훈련원 설립에 대한 추진 구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 주에 위치한 리쉬탄 시와는 지난 10월 부여중앙아시아국제교류협의회(회장 김필중) 관계자들이 리쉬탄 시를 방문한 것에 이어 12월 10일 부여를 방문하여 농업분야 기술교류 다각화를 통해 굿뜨래 농산물의 중앙아시아 판로 개척 및 부여의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교류 행사가 진행됨(충남일보, 2019. 12. 10)

● 연구 목적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리쉬탄 시와의 농업기술 교류 방안을 찾고 협력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칭)외국인농업기술훈련원 설립과 관련하여 추진 구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인 노동자(근로자)에 대한 국내 제도 검토 및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실시 중인 사례를 찾아보고자 함
- 이를 통해 부여군에서는 어떠한 방식의 외국인 노동자(근로자) 대상의 (가칭)외국인농업기술훈련원이 설립 가능할지 진단해보고자 함

02 제도 검토

●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농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크게 2가지로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가 있음. 고용허가제는 4년 10개월까지 체제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농업을 포함한 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계절근로자제는 법무부 소관으로 3~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한해 농업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음

1. 외국인 고용허가제

●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4년 8월 17일 시행)에 의한 법적 근거를 가지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임

● 취업활동 기간은 3년간으로 재고용되어 연장하는 경우는 1회로 하며 추가적으로 1년 10개월간 근무가 가능하여 총 4년 10개월 근무하게 됨

● 도입 배경으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일정한 요건 하에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 로서 동남아 지역 등 16개국에서 외국인력(비자 종류로는 E-9)인 일반고용허가제와 중국 및 구소련 국적의 동포(비자 종류로는 H-2)를 도입하는 특례 고용허가제로 구분됨(농림축산식품부, 2019)

- 일반 고용허가제 송출 국가는 총 16개국으로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즈,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MOU 체결 순)
- 농축산업에 특화된 국가로 지정된 곳으로는 네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이 있음

● 농업만이 아닌 전체 산업별 쿼터제로 결정되며 2019년의 경우 전 분야가 축소되어 농업

부문도 일부 축소되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중은 늘어나 2018년 6,600+α 명에서 2019년에는 6,400+α 명 수준임

- 농업분야 인력 배정시기 : 계절적 인력수요 반영 3회(1 · 4 · 10월)

● 2018년 12월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는 총 222,374명이며 농축산 부문은 23,804명으로 전체 약 10.7% 규모에 해당됨. 세부적으로는 작물재배업에 14,452명(60.7%), 축산업 9,076명(38.1%), 관련 서비스업 276명(1.2%)임

● 사업장 규모별 허용 인원은 영농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5명에서 20명까지로 두고 있음

● 신청절차(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https://www.eps.go.kr)는 다음과 같음

① 내국인 구인노력(농업분야: 7일)

- 고용부 워크넷을 통해 14일간 홍보(신문, 방송, 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의 경우는 7일간)

②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관할고용센터)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관할고용센터에 신청하도록 함
- 고용부에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고용허가 요건 검토 및 사업장 풀을 구성하여 점수 부여 및 고용허가사업장을 확정하고 외국인 근로자(3배수 추천)를 알선하여 사용자에 의해 적격자를 선택함

③ 고용허가서 발급

- 적격자에 대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됨

④ 근로계약 체결

- 사용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농협이 대행하는 것이 가능함. 근로계약기간은 취업활동 기간 범위 내 당사자간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계약 체결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송출국가 및 송출기관 간에 이루어지며 입국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⑤ 사증발급, 인정서발급

-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되며 이 경우에도 농협이 대행 가능함

⑥ 근로자입국/취업교육(16시간, 농업교육기관-농협중앙회)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취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농협이 맡고 있음. 취업교육은 2박3일에 걸쳐 이루어지며, 한국어 및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이탈방지 및 성희롱 예방, 업종별 기초기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이외에도 건강검진이 이루어짐

⑦ 사업장배치

- 이후 사업장에 배치됨

● 외국인 근로자 인수 및 관리 등

- 외국인전용보험가입은 의무 사항으로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에,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 역시 1시간의 교육을 받고 외국인 근로자를 인수받게 됨
- 고용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됨
- 5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고용센터 또는 출입국사무소에 이탈신고를 해야 하며 성실근로자는 재입국이 가능하게 됨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1) 개요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부터 시작되어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 법적 근거를 가지며 소관은 법무부임

● 기간으로는 농어업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90일 이내로 함

● 도입 배경으로는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마련됨

● 체류 자격으로는 단기 취업(C-4, 90일간) 비자와 장기취업 비자(E-8, 5개월)로 나누어지며 30~55세의 농업이 직업인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족(4촌 이내 및 그 배우자)이나 지자체가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선정하게 됨

● 도입 주체는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이며 농가 가구당 배정인원은 1가구 당 최대 5명(2019년 확대)로 지자체 배정인원은 지자체의 관리능력, 이탈·인권침해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총 도입규모 및 지자체별 도입인원을 산정하고 있음

  - 법무부가 농식품부·해수부·고용부·여가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배정 인원을 확정하고 있음(상·하반기 연 2회 인원이 배정)

● 관련 허용 업종은 농업이 가지는 계절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의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 등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업종으로 하며 어업 역시 90일 이내의 단기간에 작업이 종료되어야 하며 수산물 가공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업종을 대상으로 함

● 배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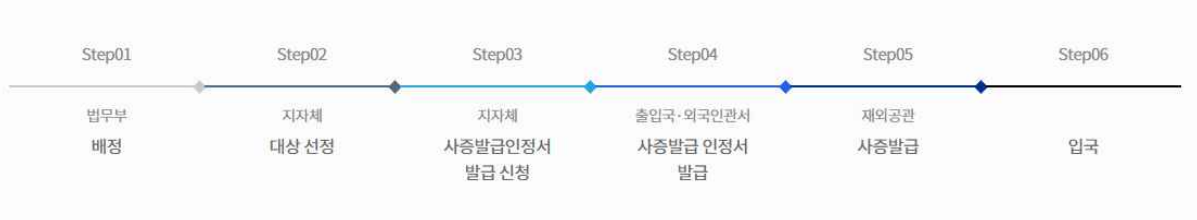

자료: http://www.moj.go.kr/immigration/1528/subview.do

● 추진 현황

  - 농림부 자료(2019)에 따르면 2015년부터 시범사업(2015년 10월~2016년 말)을 통해 괴산군 등 6개 지자체에서 219명이 입국하였고, 2017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부문에서 2,424명이 신청하여 1,463명이 배정되어 1,175명이 입국하였으며, 2018년에는 농업 부문에서 3,484명이 신청하여 2,936명이 배정되어 2,247명이 입국함. 2019년에는 농업 부문에서 4,562명이 신청하여 47개 지자체에서 3,612명이 배정됨

(2) 20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 2019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는 총 41개 지자체에 걸쳐 총 2,597명이었으며 영농조합법인이나 농가당 허용 인원은 2018년 4명에서 2019년 5명으로 확대됨

● 허용업종으로는 90일 초과 작업은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가공은 농·어업 모두 원시가공에 한해 인정하고 있음

● 신청관련 정보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 관련정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표 1] 2019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

단위 : 명

지 자 체	배정인원	지 자 체	배정인원
강원 양구군	249	세종특별자치시	5
강원 인제군	165	전남 고흥군	21
강원 정선군	79	전남 나주시	5
강원 철원군	142	전남 보성군	7
강원 춘천시	181	전남 장흥군	26
강원 태백시	24	전남 해남군	32
강원 평창군	59	전북 무주군	12
강원 홍천군	289	전북 익산시	12
강원 화천군	97	제주도 제주시	69
강원 횡성군	36	충남 논산시	12
경기 안산시	9	충남 청양군	4
경기 평택시	7	충북 괴산군	88
경기 포천시	145	충북 단양군	130
경남 창녕군	5	충북 보은군	80
경북 봉화군	66	충북 영동군	55
경북 성주군	16	충북 옥천군	26
경북 영양군	117	충북 음성군	94
경북 영주시	34	충북 제천시	75
경북 울진군	9	충북 진천군	67
경북 의성군	37	충북 청주시	3
경북 청송군	8		
41개 지자체 : 2,597명			

03 외국인 근로자 관련 현황

1. 정부 정책 관련 현황

● 고용허가제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쿼터 및 외국인 근로자 체류 현황은 아래와 같음. 우선 고용허가제 가운데 농업이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사업이 시작된 2004년 1.4%에서 2014년에는 11.7%로 그 사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을 피크로 줄고 있지만 2019년에도 11.4%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2] 고용허가제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E-9) 쿼터

단위 : 명, %

업종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3,167	31,658	28,973	34,788	76,505	62,693	38,481	49,130	53,638	58,511	51,556	51,019	57,950	56,000	58,000	56,000
농축산업	43	419	699	2,333	4,515	2,332	3,079	4,557	4,931	5,641	6,047	5,949	7,080	6,600 +α	6,600 +α	6,400 +α
비중	1.4	1.3	2.4	6.7	5.9	3.7	8.0	9.3	9.2	9.6	11.7	11.7	12.2	11.8	11.4	11.4

자료 : 고용노동부. 연도별. 「고용허가제고용동향」
재인용 : 국회입법조사처(2019)

● 체류 현황으로는 2004년 33명에서 2014년에는 23,68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27,984명으로 나타남

[표 3] 고용허가제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E-9) 체류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4	2015	2016
합계(A)	33	308	892	6,504	6,778	7,896	9,849	13,487	16,484	23,687	25,428	27,984
남성	32	276	736	-	4,982	5,753	7,107	9,550	11,507	16,335	17,261	18,676
여성(B)	1	32	156	-	1,796	2,143	2,742	3,937	4,977	7,352	8,167	9,308
여성비율 (B/A, %)	0.3	10.4	17.5	-	26.5	27.1	27.8	29.2	30.2	31.0	32.1	33.3

자료 : 법무부. 연도별.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출처 : 엄진영 외. 2017
재인용 : 국회입법조사처(2019)

● 2015년부터 도입된 계절근로자제 농업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규모로는 2015년 신청 지자체 수가 1개소 19명에서 2016년에는 지자체 6개소 200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2018년 9월 기준으로 현재 지자체 35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 2,173명이 국내에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남

[표 4] 계절근로자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C-4) 도입 규모

단위 : 개(곳), 명

	2015	2016	2017	2018. 9월 기준
신청 지자체 수	1	6	21	35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	19	200	1,086	2,173

자료 : 법무부 내부자료
출처 : 이혜경 외. 2018
재인용 : 국회입법조사처(2019)

●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가가 수요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016년 기준 최소 13,823명으로 추정됨. 참고로 한 농가당 신청할 수 있는 신규 외국인 근로자는 품목별·규모별로 최소 1인부터 최대 5명까지 허용되므로 농가가 신청한 신규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건수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됨(표5~6)

[표 5] 연도별 고용허가 신청건수 비중

단위 : %

업종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제조업	64.41	60.49	52.83	87.03	89.56	90.58	86.82	86.59	83.4	82.79	78.76	78.47	76.54
건설업	0.05	0.02	0.01	5.74	3.49	1.53	1.26	1.13	1.2	1.24	1.38	1.27	1.01
농축산업	1.55	1.06	2.03	3.08	4.89	5.35	7.82	8.65	10.97	10.77	12.83	11.87	14.05
서비스업	33.99	38.42	45.09	2.6	0.12	0.19	1.59	0.22	0.19	0.17	0.23	0.23	0.21
어업	0	0	0.04	1.55	1.95	2.35	2.52	3.41	4.24	5.03	6.79	8.16	8.18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원자료
출처 : 엄진영 외. 2017
주 : 신규, 사업장 변경신청, 성실재입국 포함 / 재발급 구인신청, 특례외국인신청 제외
재인용 : 국회입법조사처(2019)

[표 6] 농업부문 업종별 연도별 신청건수

단위 : 건수

업종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작물재배업	63	246	471	1,690	2,925	3,207	4,676	5,325	7,218	6,673	7,168	6,846	9,941
축산업	24	91	598	1,566	1,819	1,570	1,810	1,783	2,584	2,325	2,459	2,762	3,765
농업관련 서비스업	1	3	16	39	28	33	55	66	85	74	79	105	117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원자료
출처 : 엄진영 외. 2017
주 : 신규, 사업장 변경신청, 성실재입국 포함 / 재발급 구인신청, 특례외국인신청 제외
재인용 : 국회입법조사처(2019)

●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필요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신청 인원수는 2018년 기준으로 총 3,484명이었음.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에서 수요가 많았음

[표 7] 계절근로자제 지자체별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C-4) 신청 인원 수

단위 : 명

	2015	2016	2017
강원도	232	1,700	378
경기도	3	36	14
세종시	0	0	8
충청북도	151	605	103

충청남도	0	48	36
경상북도	83	166	276
경상남도	19	0	0
전라남도	11	49	7
제주도	130	58	0
총합	629	2,662	822

자료 : 법무부 내부자료
재인용 : 국회입법조사처(2019)

2. 충남 관련 현황

● 2017년 충청남도의 외국인 주민 수는 104,854명으로 도내 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4.8%로 전국 1위, 인원수로는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함

[표 8] 충청남도 외국인 주민 현황(2017년)

단위 : 명, %

총 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 (ⓒ)
	소 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104,854	84,752	33,806	8,162	6,149	15,100	21,535	7,474	12,628
(100%)	(80.8)	(32.2)	(7.8)	(5.9)	(14.4)	(20.5)	(7.1)	(12.1)

자료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팀

● 2017년 충청남도의 시군별 외국인 주민 수는 천안시(30,379명), 아산시(25,935명), 당진시(8,929명) 순으로 나타남. 시군별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아산 7.7%, 금산 5.5%, 당진 5.3% 논산 5.2%, 천안 4.6% 순이었음

[표 9] 충청남도 시군별 외국인 주민 현황(2017년)

단위 : 명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104,854	30,379	3,607	4,215	25,935	6,894	6,384	398	8,929	3,085	2,550	2,056	1,158	3,641	3,603	2,020

자료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팀

● 2017년 충청남도의 국적별 외국인 주민 수는 한국국적 취득자 및 자녀 제외하고 중국, 베트남, 태국 출신이 58.8%로 나타남.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총 5,157명으로 충청남도 국적별 외국인 주민의 6.1%를 차지하고 있음

[표 10] 충청남도 국적별 외국인 주민 현황(2017년)

단위 : 명, %

계	중 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계 러시아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몽골	미얀마	기타
84,752	22,550	9,831	9,758	7,706	5,157	4,700	3,914	2,769	2,719	1,976	1,964	1,567	1,369	1,319	7,453
100%	26.6	11.6	11.5	9.1	6.1	5.5	4.6	3.3	3.2	2.3	2.3	1.8	1.6	1.6	8.9

자료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팀

●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외국인 주민수는 최근 9년간 2.3배 증가하였음

[표 11] 충청남도 연도별 외국인 주민수 현황(2017년)

단위 : 명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년
주민 수	45,920	48,874	57,869	67,157	68,639	75,438	88,189	95,553	104,854

자료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팀

3. 부여군 농업 관련 추이

● 부여군 농가 및 농업인구 현황

- 부여군 농가수의 연도별 증감률은 농가수의 경우 연간 14.2%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업인구는 17.5%로 감소하고 있음
- 충남 부여군은 충남지역 전체 15개 시·군 중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7.4%(2014년)에서 7.0%(2018년), 농업인구 7.2%(2014년)에서 7.1%(2018년)로 소폭 감소하였음

[표 12] 충청남도 부여군 농가수, 농업인구 추이(5개년)

단위 :가구, 명, %

구분		2014 (a)	2015	2016	2017	2018 (b)	증감률 (c=b-a)
전국	농가수	1,120,776	1,088,518	1,068,274	1,042,017	1,020,838	△8.9
	농업인구	2,751,792	2,569,387	2,496,406	2,422,256	2,314,982	△15.9
충남	농가수	135,335	132,008	128,275	125,886	123,480	△8.8
	농업인구	328,993	308,455	296,801	288,800	276,426	△16.0
부여군	농가수	10,046 (7.4%)	9,607 (7.3%)	8,904 (6.9%)	8,902 (7.1%)	8,615 (7.0%)	△14.2
	농업인구	23,763 (7.2%)	22,213 (7.2%)	20,298 (6.8%)	20,014 (6.9%)	19,607 (7.1%)	△17.5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행정구역(시군구)별 농가, 농가인구

● 경지면적 현황

- 부여군의 논밭별 경지면적은 15,831ha로 충청남도(211,577ha) 대비 7.5%를 차지함

[표 13] 충청남도 부여군 경지면적 (2018년)

단위 :ha

구분	경지면적(ha)		
	합계	논	밭
전국	**1,595,614**	844,265	751,349
충청남도	**211,577**	146,703	64,874
부여군	**15,831**	12,406	3,425

자료: 통계청,「농업면적조사」, 시군별 논밭별 경지면적

- 2015년 부여군 연령별 농가의 비율은 50대 이하가 전체의 7.9%를 보이고 있으며 50대 이상이 92.1%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부여군 농가의 평균 연령은 65.3세로 충청남도 전체의 평균 연령 65.8세 보다 0.5세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충남의 경우 65~69세 비율이 전체의 16%를 차지하여 전 구간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 부여군도 65~69세 비율이 전체의 16.1%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음

[표 14] 충청남도 부여군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2015년)

단위 : 가구, %

연령	충남	부여군
20-24세	12(0.0)	2(0.0)
25-29세	77(0.1)	11(0.1)
30-34세	391(0.3)	37(0.4)
35-39세	1,061(0.8)	87(0.9)
40-44세	3,060(2.3)	241(2.5)
45-49세	5,753(4.4)	383(4.0)
50-54세	11,018(8.3)	816(8.5)
55-59세	17,432(13.2)	1,361(14.2)
60-64세	19,204(14.5)	1,472(15.3)
65-69세	**21,158(16.0)**	**1,551(16.1)**
70-74세	20,128(15.2)	1,458(15.2)
75-79세	19,301(14.6)	1,317(13.7)
80세 이상	13,413(10.2)	871(9.1)
합계	**132,008(100.0)**	**9,607(100.0)**
평균 연령(세)	65.8	65.3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경영주 연령 및 교육정도별 농가

- 2015년 부여군 경작규모별 농가의 비율은 경작규모 0.1ha 미만이 1.8%, 경작규모 0.1ha이상 1.0ha 이하 농가가 전체의 51.6%로 나타남

- 충남의 경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지규모는 0.3~0.5ha로 충남 전체의 15.7%에 해당되는 반면, 부여군의 경우도 0.3~0.5ha가 전체의 1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부여군의 경작규모 1.0ha 이상의 농가는 전체의 45.7%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충청남도 전체에서 경작규모 1.0ha 이상의 농가 비율이 37.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며 대부분 논(전) 농업을 통해 규모화 · 기계화 된 농업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15] 충청남도 부여군 경작규모별 농가 분포(2015년)

단위 : ha/가구, %

경지규모별	충남	부여군
경지없음	1,183(0.9)	83(0.9)
0.1ha 미만	2,367(1.8)	174(1.8)
0.1~0.2	15,025(11.4)	814(8.5)
0.2~0.3	10,427(7.9)	540(5.6)
0.3~0.5	**20,674(15.7)**	**1,317(13.7)**
0.5~0.7	15,241(11.5)	1,019(10.6)
0.7~1.0	17,253(13.1)	1,270(13.2)
1.0~1.5	16,690(12.6)	1,243(12.9)
1.5~2.0	10,301(7.8)	817(8.5)
2.0~2.5	5,469(4.1)	472(4.9)
2.5~3.0	3,936(3.0)	399(4.2)
3.0~4.0	4,849(3.7)	485(5.0)
4.0~5.0	2,495(1.9)	291(3.0)
5.0~6.0	1,535(1.2)	192(2.0)
6.0~7.0	1,321(1.0)	133(1.4)
7.0~10.0	1,626(1.2)	192(2.0)
10.0ha 이상	1,616(1.2)	166(1.7)
합계	**132,008(100.0)**	**9,607(100.0)**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경지규모별 농가 및 경지면적

04 사례 검토

1. 경상북도 영양군 :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1)]

- 영양군에서는 2016년 10월부터 베트남 화방군과 MOU를 체결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에는 29농가에 대해 71명을 파견하였고, 2018년에는 67농가 162명을 파견, 2019년에는 115농가 256명을 파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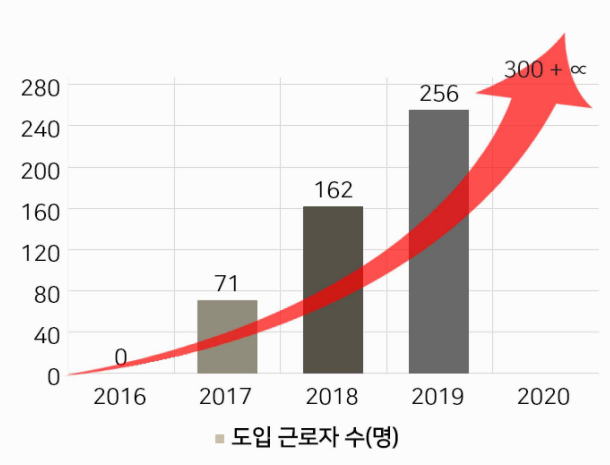

출처: 국회입법조사처(2019) 재인용

- 영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과정은 우선 입국 후 공항에서 영양까지 인솔하여 군 차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통장을 개설하거나 다양한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상견례 등을 실시하며, 이후 적응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통역요원을 활용함. 그 외에도

1) 출처는 2019년 11월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실시한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과제 세미나" 가운데 영양군 사례(영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례 및 실태)를 발췌, 정리한 것임

도시락통을 배달하는 등 적응과 관련한 지원 활동을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출국 과정을 지원함

- MOU체결 후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음. 12월에 수요조사를 하고 1월에는 농가설명회를 실시하고 주거시설을 점검함. 2월에는 도입의향서를 제출받아 3월에는 근로계약체결을 하고 배정인원을 확정하여 비자 발급을 받게 됨. 4월에는 상반기 입국 과정을 거치며 7월까지 3개월간 국내에서 일하게 됨. 8월에는 하반기 입국 과정이 이루어짐

▲ 상·하반기 농가설명회

전국매일신문

2019년 04월 23일 화요일 011면 행정

영양군, 봄철 농작업 '순항'

베트남 회방군 외국인 파견 계절근로자 61명 입국

28개 농가서 고추 정식·엽채류 채배 등 농작업 수행

도민일보

2019년 04월 23일 화요일 012면 종합

▲ 영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 영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오리엔테이션

▲ 영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시락 배달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19) 재인용

● 영양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계절근로자 진료비 경감(의료재단 협조) 등의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여 연계하고 있음

● 영양군에서 제시한 계절근로자와 (불법)근로자간 비교표는 다음과 같음

		계절근로자	(불법)근로자
개념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입국한 근로자로, 합법적 취업이 가능한 C-4 비자 소지자(19년 기준)	관광 등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고용관계를 맺고 일하는 경우(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
인건비	기본조건	월급제	일급제
	급여	월 1,745,150원 (최저임금 적용/월 209시간)	일 75,000원~80,000원 (중개인 지급 금액)
	급여지급 방법	근로자 직접 지급(계좌 권장) 월 1회 지급	고용주-중개인-근로자 (매일 작업 종료 후 지급)
	공제	숙식비 공제 월 200,000원(19년 영양군) 급여의 20%까지 공제가능	중개인 공제 일 20,000원 추정 중개 수수료 및 숙식 제공
	근로자 실수령액	월 1,545,150원(기본급여) +초과근무 수당(8,350원/1시간)	일 55,000원~60,000원
복지	근로시간	(기본계약) 일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실제운영) 일 11시간(오전 6시~오후 6시)	일 11시간 + α - 오전 6시 ~ 오후 6시 - (농장도착) ~ (작업종료)
	보험 혜택	산재보험 적용 여행자보험 가입 후 입국	산재보험 적용불가 여행자보험 가입 여부 확인 불가
	식사 및 간식	(식사) 자율(쌀, 고기 등 제공) (새참) 오전, 오후 제공(의무 아님)	(식사) 근로자 지참 (새참) 의무 제공 아님
	고용 안정	월 1,745,150원(209시간) 보장 3개월간 안정적인 농작업 가능	(농장주 입장) 공급 불안정 (근로자 입장) 수요 불안정
장단점	안정적인 인력공급	3개월 보장	- 수요 증가시 안정적 수급 불가 - 단속에 대한 우려가 늘 있음
	임금지급	장마 등으로 실제 작업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 지급 : 고용주 부담	작업한 날에만 임금 지급
	작업능력	- 입국 전 검증 불가 - 월급제 악용 근로자 발생	대체로 작업에 적극적
	재계약 가능성	고용주-근로자가 원할 경우, 재입국시 우선 배정 → 작업능률 향상	지속적인 고용 관계 유지 불가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19) 재인용

- 영양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어려운 점으로는 참여자의 증가에 따라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과 지속적인 소통과 관련한 지원 부분이 언급되었으며 개선사항으로는 고용주 중심에서 나아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를 고려한 배정이 이루어져야 함이 제시됨. 더불어 체계를 갖춘 운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이 언급됨
- 건의사항으로는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1일 인건비 산정기준을 시간제에서 일당제로 바꾸는 것이 제안되었고 전체 근로 일수의 25% 정도에서 품앗이 개념에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합법화되도록 하는 점과 소규모 농가가 함께 '연합 고용' 하는 방법 등이 거론됨. 또한 경미한 병원진료의 경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 등이 언급됨

2.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 주말 외국인 근로자 농업기계 교육

-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고용허가제로 도내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직무능력과 사업장 적응을 돕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공하고 있음
- 매주 일요일, 10회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 인원으로는 30명 내외로 교육장소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농업기계교육장으로 교육대상으로는 입국 후 3년 이상인 외국인근로자 및 성실 재입국 외국인근로자로 함
- 교육내용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농기계 교육훈련과 시설사용 무상 지원 등 훈련과정 운영지원,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방지를 위한 귀환의식 교육지원, 교육생 모집 등과 농업기계의 작동원리와 취급조작, 점검정비 기술교육과 농업기계 고장수리와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기실습으로 주요 고장에 대한 정비 핵심기술 학습 등으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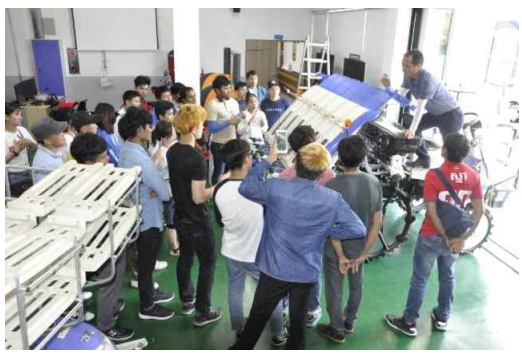

자료: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3. 충청북도 음성군 :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

- 충청북도 음성군에서는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에서 외국인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실, 법률 상담,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예산은 27억 5천만 원으로 지하1층, 지상4층-연면적 987㎡에 헬스장, 강의실, 휴게실, 상담실, 국가별 동아리방, 강당 등이 마련되어 있음
- 프로그램으로는 16개 언어 통역서비스와 검정고시반 운영, 교육, 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멘토링 사업 등이 있음
- 농업 계절근로자 파견은 캄보디아의 농림부와 농업 분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농가별 인원 배정 등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음

자료: 음성타임즈

05 (가칭)외국인농업기술훈련원 설립 추진 구상 방안

1.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사전 검토 사항

● 공통 사항

-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하여 국내 제도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농업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서 각각 4년 10개월의 기간과 3~5개월로 노동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양쪽 제도에서 모두 기본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신청 농가 및 농업법인의 여건에 맞추어 직접 계약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이러한 고용 과정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 인수 및 관리 등에 그칠 것으로 여겨짐

● 고용허가제

- 고용허가제의 경우 기간은 기본 3년에 1년 10개월을 더한 4년 10개월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에 대해 상시적인 근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농업 부문만이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쿼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 과정은 농협이 일괄적으로 인계를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농업의 특성상 빈번히 발생하는 임시노동 수요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다만, 고용허가제가 인정하는 국가 가운데 부여군과 농업 기술 교류를 가지려는 우즈베키스탄이 포함되어 있어 고용허가제를 통한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 계절근로자제

- 계절근로자제의 경우 참여 지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90일이라는 기간이 매우 짧은

동안에만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어 일이 익숙해지면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이 경우 지자체는 농가를 연결해주고 이탈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는 있지만 외국인농업기술훈련원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름

2. (가칭)외국인농업기술훈련원 설립 추진 구상 방안

● 상시적으로 가동 가능할 것인가?

- 근로 조건이 따르게 되면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제라는 중앙 정부의 제도의 틀에서 다루어지게 되어 농업법인이나 농장과의 근로계약서 체결 아래 근로를 조건으로 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상시적인 외국인농업기술훈련원의 역할에 대한 명분은 약해질 것으로 보임
- 근로 조건이 없는 상황이라면 우즈베키스탄 리쉬탄 시와의 농업 교류 및 협력 차원에서 상시적인 농업기술 이전을 위한 외국인농업기술훈련원의 역할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 이 경우 무단이탈이나 불법체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자체의 관리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될 것이며 근로를 포함하지 않는 순수 교육 기능만을 위한 농업기술훈련원 기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국내에서 근로를 하지 않는 조건이 되면 체류하는 동안의 숙식 등 체류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됨

● 어떤 기능이 필요한가?

- 교육적인 기능만을 가지는 외국인농업기술훈련으로 가져갈 경우, 우선 우즈베키스탄 리쉬탄 시에서 농업연수로 오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상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여기에 기존에 부여군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 및 이외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농업은 물론 한국살이 및 농촌살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기능을 부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글 과정은 물론 한국 기초 상식 등의 내용이 바탕이 될 것임
-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장 측의 기초적인 교육도 이곳에서 담당하여 일반적인 노사 관계 관련한 교육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 등을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임
-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원 자체가 지역에 잘 없기 때문에 부여군을 넘어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받아들이는 작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역할 분담은 어떻게 가능할까?

- 우선 기본적으로는 부여군청을 중심으로 외국인 농업인력에 대한 관리 조직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기술 교육 쪽으로는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구조를 고려해볼 수 있음
- 부여군청에서는 총괄 책임을 맡고, 민간단체나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하는 형태로 외국인농업기술훈련원을 꾸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짐
- 우즈베키스탄 리쉬탄 시와의 교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우즈베키스탄 리쉬탄 시 측의 역할 분담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19), 농업분야 인력 수급현황,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과제 세미나

· 국회입법조사처(2019), 영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례 및 실태,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과제 세미나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법무부 내부자료

· 충남도청 내부자료

· 통계청(2005, 2010, 2015). 농림어업총조사.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11~2018). 농림어업조사. 대전: 통계청.